

## 계좌통합관리 서비스 이용약관

현 행	개 정 (안)	개정사유
<p>제 1 조 &lt; 생 략 &gt;</p> <p>제 2 조 &lt; 생 략 &gt;</p> <p>① &lt;생 략&gt;</p> <p>1.~ 5. &lt;생 략&gt;</p> <p><b>6. &lt; 신 설 &gt;</b></p> <p><b>7. &lt; 신 설 &gt;</b></p> <p>② &lt; 생 략 &gt;</p> <p>제 3 조 &lt; 생 략 &gt;</p> <p><b>제 4 조 (이용방법)</b></p> <p>①&lt;생 략&gt;</p> <p>② <u>휴대폰 본인인증은 고객이 선택한 주거래은행에 등록된 휴대폰번호 인증과 통신사 휴대폰인증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.</u></p> <p><b>제 5 조 &lt; 신 설 &gt;</b></p>	<p>제1조 &lt; 좌 동 &gt;</p> <p>제2조 &lt; 좌 동 &gt;</p> <p>① &lt;생 략&gt;</p> <p>1. ~ 5. &lt;생 략&gt;</p> <p><b>6. "휴대폰 인증"이란 고객이 선택한 주거래은행에 등록된 휴대폰번호를 통해 인증을 받거나 통신사의 본인명의 휴대폰을 통해 인증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.</b></p> <p><b>7. "간편번호"란 애플리케이션에서 서비스 이용등록시 고객이 직접 입력하는 6자리 숫자로 공인인증서 없이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을 할 수 있는 식별번호를 의미합니다.</b></p> <p>②&lt;좌 동&gt;</p> <p>제 3 조 &lt; 좌 동 &gt;</p> <p><b>제 4 조 (홈페이지 이용방법)</b></p> <p>①&lt; 좌 동&gt;</p> <p>② &lt;삭 제&gt;</p> <p><b>제 5 조 (애플리케이션 이용방법)</b></p> <p>① <u>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은 휴대폰 등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본인의 공인인증서 제출과 휴대폰 인증을 거쳐 이용등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.</u></p> <p>② <u>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로그인 방법은 본인명의 공인인증서 제출과 간편번호 입력 중 선택 가능하며, 로그인 방법과 간편번호는 애플리케이션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.</u></p>	<p>- 모바일서비스 시행에 따른 내용추가</p> <p>-모바일서비스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 이용 방법 변경</p> <p>-모바일서비스 이용방법</p>

현행	개정(안)	개정사유
<p><u>제 6 조 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제 5 조 (조회)</u>            ① &lt;생 략&gt;            ② &lt;신 설&gt;.</p> <p>② &lt;생 략&gt;.</p> <p>③ &lt;생 략&gt;</p> <p>④ &lt;생 략&gt;</p> <p><u>제 6 조(잔고이전·해지)</u>            ① <u>본 서비스에서는 제 2 조 제 1 항 제 5 호의 “소액비활동성계좌”에 한하여 잔고이전·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.</u>            ②~⑤ &lt;생 략&gt;</p>	<p>③ <u>간편번호를 5회 이상 오류입력한 경우에는 제1항의 이용등록에 준하는 인증절차를 거쳐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간편번호를 재등록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④ <u>이용등록은 애플리케이션에서 해지할 수 있으며, 이용등록 후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1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을 경우 이용등록이 자동해지됩니다.</u></p> <p>⑤ <u>휴대폰 등 동일한 기기에 다른 주민등록번호로 이용등록하는 경우 기존 이용등록은 자동해지됩니다.</u></p> <p><u>제 6 조 (은행창구 이용방법)</u>  <u>은행창구에서는 예금주 본인확인 절차와 신청서 작성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<u>제 7 조 (조회)</u>            ① &lt;좌 동&gt;            ② <u>고객은 은행창구를 통해 비밀번호 확인 없이 전 은행에 개설된 계좌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은행창구에서는 활동성 계좌에 대한 상세정보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.</u>            ③ &lt;좌 동&gt;</p> <p>④ &lt;좌 동&gt;</p> <p>⑤ &lt;좌 동&gt;</p> <p><u>제 8 조 (잔고이전·해지)</u>            ① <u>인터넷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제2조 제1항 제5호의 “소액 비활동성계좌”에 한하여 잔고이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.</u>            ②~⑤ &lt;좌 동&gt;</p>	<p>-은행창구이용 방법</p> <p>-신설에 따른 번호체하</p> <p>-은행창구 조회방법</p> <p>- 번호체하</p> <p>-모바일 서비스 실시</p>

현 행	개 정 (안)	개정사유
<p><u>제 7 조</u> (서비스 이용수수료)</p> <p><u>제 8 조</u> (약관이 변경)</p> <p><u>제 9 조</u> (다른약관과의 관계)</p>	<p><u>제 9 조</u> (서비스 이용수수료)</p> <p><u>제 10 조</u> (약관이 변경)</p> <p><u>제 11 조</u> (다른 약관과의 관계)</p>	<p>-번호제하</p> <p>-번호제하</p> <p>-번호제하</p>